



식품용 살균제 현장 가이드라인

2019.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살균제에 대하여 고시 내용을 편집하여 나열한 것으로,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0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3-719-2510

팩스번호: 043-719-2500

☐ ☐ 목 차 ☐ ☐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식품용 살균제 일반사항	1
3.1. 사용목적	1
3.2. 관련법령	2
3.3.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	3
3.4. 종류별 사용기준	4
3.5.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선택기준	5
4.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6
5. 식품용 살균제의 사용·보관 시 주의사항	7
5.1. 제품 표시사항 확인	7
5.2. 조제 시 주의사항	7
5.3. 보관 시 주의사항	8
6. 식품용 살균제 종류별 특성	9
6.1. 차아염소산나트륨	9
6.2. 차아염소산수	11
6.3. 차아염소산칼슘	13
6.4. 이산화염소수	14
6.5. 오존수	15
6.6. 과산화수소	16
6.7. 과산화초산	17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식품용 살균제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올바른 사용과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식품의 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품용 살균제를 사용하여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을 살균할 때 적용할 수 있다.

3. 식품용 살균제 일반사항

3.1. 사용목적

식품용 살균제란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식품 첨가물을 말하며, 유해 미생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식중독균

- ▶ 병원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캄필로박터, 바실러스 세레우스, 예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등

3.2. 관련 법령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재된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첨가물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에 사용하는 살균제를 식품용 살균제로,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구분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위생법 제2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 ▶ 식품에 사용하는 살균제 : **식품용 살균제**
- ▶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참고로, 세척 시 사용하는 ‘세척제’의 경우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세척제, 살균제, 살균소독제 구분

세척제	식품용 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p>▲법령 - 위생용품관리법</p> <p>▲사용 대상 - 야채, 과일 등(1종) - 음식기, 조리기구 등(2종)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3종)</p>	<p>▲법령 - 식품위생법</p> <p>▲사용 대상 -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 - 식육(가금류, 포유류)</p>	<p>▲법령 - 식품위생법</p> <p>▲사용 대상 - 식품접객업용 기구등, 집단급식소용 (1회 50인미만 제공 급식소용 포함) 기구등 - 유가공용 기구등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p>

3.3.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과산화수소(H_2O_2), 차아염소산나트륨($NaClO$), 차아염소산칼슘($Ca(ClO)_2$), 차아염소산수($HOCl$), 이산화염소수(ClO_2), 오존수(O_3), 과산화초산(CH_3COOOH) 7품목에 대해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품용 살균제의 종류



3.4. 종류별 사용기준

식품용 살균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품목별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목명	사용기준									
차아염소산나트륨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아염소산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차아염소산칼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이산화염소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오존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과산화수소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	<p>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분</th> <th>과일·채소류</th> <th>식육</th> </tr> </thead> <tbody> <tr> <td>과산화초산</td> <td>0.080 g/kg</td> <td>포유류 1.8 g/kg 가금류 2.0 g/kg</td> </tr> <tr> <td>HEDP</td> <td>0.0048 g/kg</td> <td>포유류 0.024 g/kg 가금류 0.136 g/kg</td> </tr> </tbody> </table>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 g/kg	포유류 1.8 g/kg 가금류 2.0 g/kg	HEDP	0.0048 g/kg	포유류 0.024 g/kg 가금류 0.136 g/kg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 g/kg	포유류 1.8 g/kg 가금류 2.0 g/kg								
HEDP	0.0048 g/kg	포유류 0.024 g/kg 가금류 0.136 g/kg								

3.5.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선택 기준

살균제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사용상의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넓은 범위의 미생물 살균력, 살균 효과의 지속성, 온도 및 pH의 영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살균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 목적과 조건에 맞는 최적의 살균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살균제 사용 전 미리 세척을 해야 하는데, 유기물에 의해 살균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살균제 용액을 식품 표면에 분무하거나 식품을 살균제 용액에 침지한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등 살균제가 식품에 잔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살균제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사용법에 따라 적합한 농도로 희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살균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식품용 살균제의 올바른 사용 예



▶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여 과일류나 채소류 등을 살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 유효염소 80~130 ppm을 함유하는 용액에 5분간 침지하였다가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행구어준다.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의 경우 제품에 따라 유효염소 20~70 ppm을 함유하는 용액에 식품을 1~2분 동안 침지하였다가 흐르는 물에 2~3회 이상 행구어준다.

▶ 이산화염소수의 경우 제품 사용방법에 따라 이산화염소 함량 10 ppm 이내의 용액을 분무하거나 식품을 침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과산화수소의 경우 제품 사용방법에 따라 400~1,200 ppm의 농도로 희석하여 식품에 직접 분사하거나 침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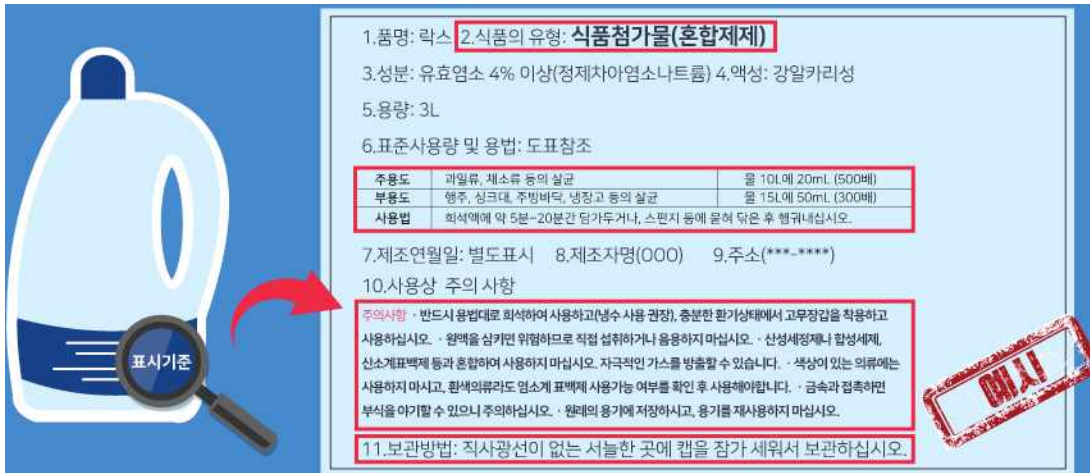
5. 식품용 살균제 사용 · 보관 시 주의사항

5.1. 제품 표시사항 확인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첨가물’ 또는 ‘혼합제제’로 표시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제품명, 업소명(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료명 및 성분명을 확인하고 보관방법, 사용기준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용 살균제의 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료명
또는 성분명 등을 표시



1.품명: 락스 2.식품의 유형: **식품첨가물(혼합제제)**

3.성분: 유효염소 4% 이상(정제차아염소나트륨) 4.액성: 강알칼리성

5.용량: 3L

6.표준사용량 및 용법: 도표참조

주용도	과일류, 채소류 등의 살균	물 10L에 20mL (500배)
부용도	행주, 싱크대, 주방바닥, 냉장고 등의 살균	물 15L에 50mL (300배)
사용법	희석액에 약 5분~20분간 담가두거나, 스펀지 등에 묻혀 닦은 후 헹궈내십시오.	

7.제조연월일: 별도표시 8.제조자명(OOO) 9.주소(***-****)

10.사용상 주의 사항

주의사항 · 반드시 용법대로 희석하여 사용하고(냉수 사용 권장), 충분한 환기상태에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 원액을 삼키면 위험하므로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 산소계표백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극적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 색상이 있는 의류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흰색의류라도 염소계 표백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금속과 접촉하면 부식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원래의 용기에 저장하시고,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11.보관방법: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캡을 잠가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5.2. 조제 시 주의사항

- ▶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계량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함량(% 또는 ppm)을 확인하고, 물(음용수)로 희석하여 조제
- ▶ 염소계 살균제는 사용 전 유효염소 농도를 반드시 확인
- ▶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 ▶ 살균제 희석액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살균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시 즉시 조제
- ▶ 살균 목적의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량을 사용

식품용 살균제의 조제방법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계량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성분함량(% 또는 ppm)을 확인하고, 물(음용수)로 희석하여 조제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사용 직전에
희석액 조제

살균을 위한
최소량 사용

5.3. 보관 시 주의사항

지정장소 보관 : 분리, 출입제한

➡ 적절한 크기로 환기가 되는 장소

산성 또는 강염기성 제품과는 분리하여 보관

암소에 보관

모든 용기(containers)에 명확한 표시

보관장소에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비치

보관장소에 갖추어야 할 도구

➡ 위급상황에 조치할 수 있는 도구

➡ 보호의, 장갑, 고글 등 보호장비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입구를 단단히 막은 후 보관

6. 식품용 살균제 종류별 특성

6.1. 차아염소산나트륨

1) 정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NaClO)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식염수를 전기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 일명 ‘락스’라고 불리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염소계 살균제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식품용 살균제이며,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품용 살균제이다.

2) 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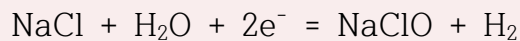
유효염소 4.0% 이상을 함유한다. 식염수를 전기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은 100 ppm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따라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전기분해를 이용한 제조 방법

수돗물 또는 음용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고 소금을 미량 첨가하여 물을 전기분해 함으로써 전해된 차아염소산나트륨 성분의 강력한 살균력을 가진 살균제를 생성한다.

미량의 소금 + 물 + 전기 = 차아염소산나트륨 + 수소



3) 특징 및 효과

무색 또는 옅은 노황색 액체로서 우수한 살균효과를 지닌 안전한 물질이지만, pH, 온도, 유기물, 빛 등에 불안정하고 특유의 염소 냄새를 가지고 있다.

☞ 보관 시 열이나 직사광선에 의해 분해되어 살균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참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참깨에 사용 시, 색이 검고 품질이 좋지 않은 참깨가 표백 처리 되면서 양질의 참깨로 둔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6.2. 차아염소산수

1) 정의

차아염소산수(Hypochlorous Acid Water, HOCl)는 전해수(Electrolyzed Water)의 한 종류로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 분해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다.

산성도 및 유효염소 함유량에 따라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로 분류된다.

▶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 0.2% 이하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격막으로 분리된 양극 및 음극으로 구성된 유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기분해 후 양극 측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용액으로 pH는 2.7 이하이다.

▶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 적절한 농도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격막으로 분리된 양극 및 음극으로 구성된 유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기분해 후 양극에서 얻어지는 수용액 또는 양극에서 얻어지는 수용액에 음극에서 얻어지는 수용액을 가한 것으로 pH는 2.7~5.0이다.

▶ **미산성 차아염소산수** : 염산 또는 염산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여 적절한 농도로 조정된 수용액을 무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기분해 후 얻어지는 수용액으로 pH는 5.0~6.5이다.

2) 함량

강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20~60 ppm, 약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60 ppm 및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유효염소 10~80 ppm을 함유하여야 한다.

3) 특징 및 효과

무색의 액체로, 무취 또는 옅은 염소의 냄새가 있다. 특히 미산성 차아염소산수는 세균, 바이러스, 조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살균효능을 갖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식품 산업과 농업, 의료기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4)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6.3. 차아염소산칼슘

1) 정의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은 다른 이름으로 고도표백분(Highest bleaching powder)이라 부르기도 하며, $\text{Ca}(\text{ClO})_2$ 의 화학식을 가진 무기 화합물이다.

표백 분말, 염소 분말 또는 염소 석회라고 불리는 상업용 제품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수처리 또는 표백제로도 사용된다.

2) 함량

유효염소 60.0% 이상을 함유한다.

☞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따라 적정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3) 특징 및 효과

백색 혹은 유백색의 과립 또는 분말로서 염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4)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6.4. 이산화염소수

1) 정의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ClO₂)는 한 개의 염소원자와 두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이산화염소는 상온에서 적갈색에서 황갈색-녹색 가스 형태이며, 이산화염소수(Chlorine Dioxide Water)는 이산화염소를 함유한 연황색의 자극성 냄새를 가지는 액체이다.

2) 함량

별도의 함량 기준은 없으며, 함량이 약 3~8%인 제품이 시판중이다.

 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따라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3) 특징 및 효과

이산화염소는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수용성이 10배 정도 높고, 유기물과의 반응성이 약하여 처리 후 반응 부산물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살균력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기 중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어 신선식품 등에 적합한 살균제라고 할 수 있으나, 채소류에 이산화염소를 처리했을 때 갈변반응이나 표백으로 인해 관능적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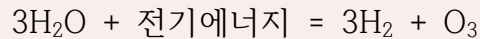
4)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6.5. 오존수

1) 정의

오존수(Ozone Water)는 오존발생기에서 생성된 오존기체를 용존시켜 얻어지는 것으로 오존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이다.



2) 함량

오존(O₃) 1.0 mg/L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 *E. coli* 등 대장균 및 대장균군의 경우 0.3~0.5 ppm 이상의 농도에서 강한 살균력을 보이며,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의 경우에는 2.0~3.0 ppm 이상의 농도에서, 비브리오의 경우에는 0.5 ppm 이상의 농도에서, 살모넬라의 경우에는 2.0~3.0 ppm 이상의 농도에서 강한 살균력을 보인다.

3) 특징 및 효과

무색의 액상으로서 특유한 냄새가 있으며, 강력한 산화제로 세균, 효모, 곰팡이, 바이러스 등 넓은 살균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pH 6 이상에서는 pH가 상승할수록 분해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온도에 민감하여 수온이 증가할수록 오존의 용해도는 감소된다.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 탈취, 탈색 효과가 있으며, 유기물 및 무기물과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 및 식품가공시설, 폐수 처리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4) 사용기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6.6. 과산화수소

1) 정의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H_2O_2 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로서 산화성이 강한 물질이다. 표백제, 샴푸, 상처 소독제 및 수 처리제 등의 용도로도 사용된다.

2) 함량

과산화수소를 30.0~50.0% 함유한다.

3) 특징 및 효과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냄새가 있다. 과산화수소는 불안정한 구조로 발열과 함께 산소와 물로 쉽게 분해되며, 강력한 산화제로 유기물과 접촉 시 자발적 연소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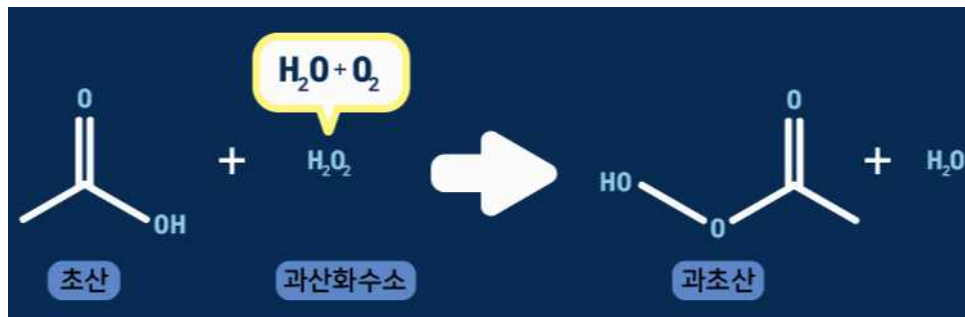
4) 사용기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하거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6.7. 과산화초산

1) 정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은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유효성분으로 과산화초산,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함유하는 것 또는 과산화수소, 초산 및 카프릴산(이명 : 옥탄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유효성분으로 과산화초산, 과산화옥탄산, 과산화수소, 카프릴산 및 초산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희석 또는 품질안정 등을 위하여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을 첨가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코덱스 등에서 과일·채소, 축산물(포유류, 가금류)에 식품용 살균제로 허용되어 있다.

2) 함량

과산화초산(C₂H₄O₃) 5 ~ 18%, 초산(C₂H₄O₂) 15 ~ 60%, 과산화수소(H₂O₂) 4 ~ 25%,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 1.0% 미만 및 카프릴산 10% 이하를 함유한다.

3) 특징 및 효과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특이한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대부분의 식품용 살균제는 유기물이 존재할 때 살균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징이

있어 축산물 등에 대해서는 살균효과가 낮은 단점이 있으나, 과산화초산의 경우에는 유기물이 있더라도 살모넬라 등과 같은 식중독균에 대해 약 10~1,000배 이상의 살균력을 나타내어 축산물 등에 효과가 좋은 살균제이다.

※ 과산화초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살균력 비교

온도	대장균사멸율	vs	온도	대장균사멸율
4°C	99.999% 이상		4°C	99.865%
10°C	99.999% 이상		10°C	99.865%
20°C	99.999% 이상		20°C	99.983%

과산화초산(0.05%)
차아염소산나트륨(0.1%)

4) 사용기준

아래 식품에 한하여 살균의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식품 표면으로부터 침지액 또는 분무액을 털어내거나 흘려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과산화초산의 사용량(농도)은 과산화초산 및 1-하이드록시에틸리덴-1,1-디포스포닌산 (HEDP)으로서 아래의 기준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성분	과일·채소류	식육
과산화초산	0.080 g/kg	포유류 1.8 g/kg 가금류 2.0 g/kg
HEDP	0.0048 g/kg	포유류 0.024 g/kg 가금류 0.136 g/kg

식품첨가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하세요!



☞ 식품안전나라 >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홍보자료, 웹툰, 영상자료

식품용 살균제 현장 가이드라인

발 행 일 : 2019. 10. 18.

발 행 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의 경

편집위원장 : 식품기준기획관 이 윤 동

편 집 위 원 : 오금순, 조태용, 김동규, 선남규, 안종훈, 이상호, 김준현, 신춘식,
정영지, 홍성이, 황지원, 최창원, 장지은(첨가물기준과)
강윤숙, 김승환, 임호수, 이수빈(첨가물포장과)

발 행 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TEL : 043-719-2510 FAX : 043-719-2500



식품의약품안전처

(우 2819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심사동A 51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http://www.mfds.go.kr>>